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7.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제출) 일자	심사경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772호)	유상범의원	2024.11.21.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 회의(2025.1.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9521호)	임미애의원	2025. 4. 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 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2025. 5. 1. 자로 직접 회부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7.2.)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7.3.)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
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94조제11
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2.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9조의5제9항을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제99조의3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u> <u>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u> <u>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u>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u>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

2.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⑦ 법무부 장관은 전문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u>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령으로 정한다.</u>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1의2. 제19조의5제9항을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u>
12. ~ 20. (생략)	12. ~ 20. (현행과 같음)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제99조의3(양벌규정) ----- ----- ----- ----- ----- ----- ----- ----- ----- ----- ----- -----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